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6. 23 선고 2022가단1298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3. 6. 9.

판 결 선 고 2023. 6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B과 피고 사이에 2021. 12. 27. 체결된 25,000,000원 증여계약 및 2022. 2. 3. 체결된 31,799,719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6,799,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1 <표1> B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채납액 기재와 같이 합계 477,890,7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.

나.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.

다. B과 피고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2. 20. 접수 제93648호 및 제936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B과 피고는 2021. 12. 27. 이 사건 주택을 C, D에게 3억 8,500만 원에 매도하고, 2021. 12. 27. 계약금 5,000만 원, 2022. 2. 3. 잔금 중 123,599,437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.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2. 3. 접수 제16200호 및 제16203호로 C,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B과 피고가 C,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2억 790만 원)과 주식회사 E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9,100만 원)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.

바. 피고는 2022. 2. 15.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주택의 처분가액 3억 8,500만 원 중 1/2인 1억 9,250만 원은 B의 몫이고, 그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75,700,281원 및 주식회사 E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6,000만 원을 뺀 나머지 56,799,719원이 B의 적극재산이다.

그런데 B은 원고에게 거액의 국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적극재산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는바, 매수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21. 12. 27. 송금한 5,000만 원 중 2,500만 원, 2022. 2. 3. 송금한 123,599,437원 중 31,799,719원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한편 B은 원고로부터 국세납부 고지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도

가지고 있었다.

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증여받은 56,799,719원(= 2,500만 원 + 31,799,719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2021. 12. 27. 및 2022. 2. 3.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정희철

별지1

<표1> []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채납액

(단위:원)

관할서	세목	납부기한	채납액	귀속시기	납세의무 성립일	비고
송과	부가가치세	2021.12.31.	14,746,480	2018-01	2018.06.30.	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
송과	부가가치세	2021.12.31.	25,219,240	2017-01	2017.06.30.	
송과	부가가치세	2021.12.31.	24,327,070	2016-07	2016.12.31.	
송과	부가가치세	2021.12.31.	21,146,440	2017-07	2017.12.31.	
송과	부가가치세	2021.12.31.	27,119,080	2016-01	2016.06.30.	
잠실	종합소득세	2021.12.31.	13,802,730	2018-01	2018.12.31.	
잠실	종합소득세	2021.12.31.	34,374,480	2020-01	2020.12.31.	
잠실	종합소득세	2021.12.31.	1,396,230	2017-01	2017.12.31.	
잠실	종합소득세	2021.12.31.	4,254,550	2016-01	2016.12.31.	
잠실	종합소득세	2021.12.31.	66,160,480	2019-01	2019.12.31.	
잠실	부가가치세	2021.12.31.	12,614,380	2018-01	2018.06.30.	
잠실	부가가치세	2021.12.31.	26,111,360	2019-01	2019.06.30.	
잠실	부가가치세	2021.12.31.	10,605,350	2020-01	2020.06.30.	
잠실	과태료	2021.12.31.	147,840,200	2021-12	2021.12.01.	고지일
잠실	과태료	2021.12.31.	43,774,570	2021-12	2021.12.01.	
잠실	종합소득세	2022.07.20.	4,398,080	2019-01	2019.12.31.	
채납액 합계			477,890,720			

별지2

부동산의 표시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송파구 F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송파구 G

철근콘크리트조 4층 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
1층 118.82㎡

2층 124.74㎡

3층 124.74㎡

4층 118.82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송파구 F 대 208.5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59.89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208.5분의 29.96 ㎡

별지3

부동산의 표시

(1등의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김포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김포시 L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 콘크리트지붕 21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층 116.0435㎡

2층 내지 20층 각 481.4774㎡

21층 320.3704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경기도 김포시 I 대 67607.4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9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.1119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67607.4분의 44.7224 끝.

